



고용노동부



울산광역시

울산일자리재단
Ulsan Job Foundation

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

일자리 창출 고용장려금 참여업체 모집



일자리 창출 고용장려금이란?

2021년 울산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울산고용안정지원센터에서는 울산 내 자동차부품산업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울산지역 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임.



지원내용 및 참가서류

	지원대상
	고용장려금
	참여 신청서류
	지원금 신청서류
	유의사항

기업체

- 신규 채용 예정인 울산지역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
(※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과 거래한 거래명세서가 있는 기업)

취업자

- 만 40대 이상 울산광역시 거주 구직자

- 지원인원: 기업당 최대 30명
※ 단, 1개월이라도 지원받은 대상자(중도퇴사자)는 지원 한도 인원에 포함
- 지원금액 : 1명당 최대 300만원(월100만원×3개월) 고용장려금 지원(예산소진 시까지)
- 지급기간 : 신규채용 후 3개월간 매월 신청
- 지급조건 : 계좌이체(법인명의 계좌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의 계좌)

- ① 일자리 창출 고용장려금 참여신청서「서식1」
- ② 일자리 창출 고용장려금 체크리스트「서식2」
- ③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「서식4」
- ④ 지역산업맞춤 동의서「서식5」
- ⑤ 사업자등록증

- ⑥ 기업통장사본
- ⑦ 고용 · 산재보험 완납증명원
- ⑧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
- ⑨ 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자 주민등록등본
- ⑩ 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

- ① 일자리 창출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「서식3」
- ② 급여명세서
- ③ 급여이체확인증

지원금 신청서류

- ※ 필요시 출근부 등의 서류 요청 가능
- ※ 통장사본 : 기업통장사본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통장사본) / 대표자 개인 통장사본은 안됨
- ※ 해당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: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발급 분에 한함

유의사항

※ 「서식」은 울산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참고(<https://ujf.or.kr>)

※ 제외사업장

1.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당해년도 수혜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

2. 「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*을 영위하는 사업주

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 제5호의 '청소년유해업소', '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'에 해당하는 업종 등